

### 부속서 III

##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 말레이시아

## 목록 가

###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a)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b) 제8.5조(시장접근)

(c)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d) 제8.11조(현지주재)

(e)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f)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a)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b) **하위분야**는 지칭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c)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d) **관련의무**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e) **유보내용**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명시한다. 그리고

(f)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i)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ii)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조치에 적용하지 않는다.

4. 다른 당사자들의 양허표는 이 협정의 제8장(서비스 무역), 제10장(투자) 또는 다른 장들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만이 말레이시아에서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다. 외국국민은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을 등록할 수 있으나 준법감시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다.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56년 사업등록법 [법 제197호] 2012년 유한책임파트너십법 [법 제743호] 1993년 협동조합법 [법 제502호] 1932년 상호 법령 [사라왁 제64호] (1958판) 1955년 사업 · 직업 · 무역 허가 법령 [사라왁 제33호] (1958판)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투자</u>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명은 말레이시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말레이시아에 상시적으로 거주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명은 말레이시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말레이시아에 상시적으로 거주한다.
	조치	:	2016년 회사법[법 제777호]

3	분야	: 수산업
	하위분야	해양 포획 수산업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어선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 <sup>1</sup> 에서 어류, 연료 또는 보급품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류도 환적하지 않고 어로나 어로 시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수산업에 대한 기술경제 연구 또는 수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어로를 위한 허가 신청은 그러한 어선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및 금융적 책임을 지는 말레이시아 대리인을 통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어선”이란 다음의 용도로 사용 또는 사용되도록 장비를 갖추거나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의 모든 보트, 특수선박, 배 또는 그 밖의 선박을 말한다.  (a) 어업, 또는 (b) 어류 준비, 가공, 냉장, 보관, 공급 또는 운송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어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보트, 특수선박, 배 또는 그 밖의 선박을 돕거나 지원함.
	조치	: 1985년 수산업법 [법 제 317 호]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5년 수산업법」 [법 제317호]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이란 법에 의하여 배타적 어업권 또는 수산업 관리권이 주장되는 말레이시아 관할하의 해양 수역을 말하며, 말레이시아의 내수, 말레이시아의 영해 및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는 해양 수역을 포함한다.

		1971 년 말레이시아 수산업개발청법 [법 제 49 호] 1984 년 배타적 경제수역법 [법 제 311 호] 1966년 대륙붕법 [법 제83호]
--	--	--

4	분야	: 특허 대리인 서비스 상표 대리인 서비스 저작권 대표자 산업디자인 대리인 서비스 지리적 표시 대리인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이면서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에 등록된 인만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 개업 또는 활동하도록 허용된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이거나 말레이시아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에 등록된 인만이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산업디자인 또는 지리적 표시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 개업 또는 활동하도록 허용된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인 모든 인 또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저작권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치	: 1983년 특허법[법 제291호] 1976년 상표법[법 제175호] 1996년 산업디자인법[법 제552호] 2000년 지리적표시법[법 제602호] 1987년 저작권법[법 제332호]



5	분야	: 다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인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적산 서비스 토지측량 서비스 건축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관련 전문 직업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적격 인은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적산, 토지측량 및 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전문 직업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산 및 건축 자문 업무는 관련 전문 직업인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설립체의 경우, 이사 중 3분의 2의 다수가 등록되고 승인받은 전문 직업인이다. 이는 등록되고 승인받은 전문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적산사로 구성된 복수 전문직 간 동업(MDP)에도 적용된다.
	조치	: 1967년 엔지니어등록법(1974년 개정) [법 제138호] 1990년 엔지니어등록 규정 [P.U.(A) 제128/90호]

		1958년 허가 받은 토지측량사법(1992년 개정)[법 제458호] 1967년 건축사법[법 제117호] 1996년 건축사 규칙[P.U.(A) 제379/96호] 1967년 적산사법(1992년 개정)[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P.U.(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법 제520호] 행정 지침 2001년 토지측량사 법령[사라왁 제40호]
--	--	---

6	분야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평가사·감정인·부동산중개인 및 자산관리인 위원회에 등록된 인 및 등록된 승인받은 외국인만이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치	:	1981년 평가사·감정인·부동산중개인법 [법 제242호] 1986년 평가사·감정인·부동산중개인 규칙 [P.U. (A) 제64/1986호] 1999년 평가 및 자산 서비스 규칙 [P.U(A) 제382/99호]

7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 내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허가 및 등급 허가로 나누어진다.  다음의 인 또는 인의 집단은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a) 「2016년 회사법」 [법 제 777 호]에 정의된 외국 회사 (b) 개인 또는 단독소유기업 (c) 파트너십, 그리고 (d) 장관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인 또는 인의 집단  다음의 인 또는 인의 집단은 등급 허가 소지자로서 등록할 자격이 없다.  (a)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개인, 그리고 (b) 「2016년 회사법」 [법 제 777 호]에 정의된 외국 회사

		<p>외국인은 위성방송, 가입형 방송, 지상파 무료 텔레비전 또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지칭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의 특별 부분 집합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를 위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p> <p>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장관은, 정당한 사유로 또는 공익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위의 인 중 어느 한쪽이 위에 언급된 허가 소지자 중 하나로 등록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조치	:	<p>1998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법 [법 제588호]</p> <p>2000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허가)규정 [P.U.(A) 제 129/2000호]</p>

8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8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교육 서비스, 기술 훈련 센터 및 직업 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되고 승인을 받은 교육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조치	:	1996년 교육법[법 제550호] 1996년 민간고등교육기관법[법 제555호] 2006년 국가기술개발법[법 제652호] 행정 지침

9	분야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민간 보건의료 시설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되거나 매입, 합병 또는 인수를 통하여 획득하고 승인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b>전문 의료 서비스</b>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의료 위원회로부터 임시 개업 증명서를 부여받고 국가 전문가 등록부에 전문가로 등록되지 않는 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b>전문 치의료 서비스</b>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치의료 위원회로부터 임시 개업 증명서를 부여받고 전문가로 인정받지 않는 한 전문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b>연합 보건 서비스</b>  외국인은 연합 보건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되고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p><b>약사</b></p> <p>외국인 약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 및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약학 위원회와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의약품을 준비, 조제, 배합 또는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전통 및 보완 의학</b></p> <p>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되고 승인받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조치	<p>: 1971년 의료법[법 제50호]</p> <p>2017년 의료 규정[P.U. (A) 제188/2017호]</p> <p>2018년 치의료법[법 제804호]</p> <p>1998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법[법 제58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민간 의료 진료소 또는 민간 치의료진료소)규정 [P.U. (A) 제137/200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민간 병원 및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 시설)규정 [P.U.(A) 제138/2006호]</p> <p>1951년 약사등록법[법 제371호]</p> <p>1952년 독극물법(1989년 개정) [법 제366호]</p> <p>2016년 연합보건전문직업인법[법 제774호]</p> <p>2016년 전통 및 보완의학법[법 제775호]</p> <p>행정 지침</p>



10	분야	: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49 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67년 관세법(1980년 개정) [법 제235호] 1977년 관세 규정[P.U.(A) 제162/77호] 관세 상시명령 제45/2003호

11	분야	:	여행 대행 및 관광객 안내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여행 대행 및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92년 관광산업법 [법 제482호] 행정 지침

12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해운 선박은 국내 해운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b>말레이시아 국제 선박 등록소</b>  외국인은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 현지에서 설립한 합작투자 또는 회사를 통해서만 국내 수역에서 국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합작투자 또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하려는 모든 합작투자 또는 회사는 선박 등록 전 다음의 선박 관리자를 임명한다.  (a) 말레이시아에 영주하는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b)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에 주 사업장을 둔 회사

		<p><b>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b></p> <p>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에 등록된 선박만이 국내 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외국인은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 현지에서 설립한 합작투자 또는 회사를 통해서만 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합작투자 또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p> <p>이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하려는 모든 합작투자 또는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p> <p>(a)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의 과반수가 말레이시아인이다. 그리고</p> <p>(b)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자사의 주요 사업 활동을 한다.</p>
조치	:	<p>1952년 상선 법령 [법령 제70/1952호]</p> <p>1960년 상선 법령 (사바) [법령 제11/1960호]</p> <p>1960년 상선 법령 (사라왁) [법령 제2/1960호]</p> <p>2007년 상선 (개정 및 연장) 법 [법 제A1316호]</p> <p>행정 지침</p>

13	분야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 (CIDB)에 등록되었으며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현지에서 설립된 실체만이 건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 또는 컨소시엄의 방식으로 외국인 지분이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어떠한 실체도 건설산업개발위원회의 등록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p> <p>각 외국 실체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말레이시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실체의 경영과 투자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p>
	조치	:	1967년 엔지니어 등록법(1974년 개정) [법 제138호] 1990년 엔지니어 등록 규정 [P.U. (A) 제128/90호] 1958년 허가 받은 토지측량사법(1991년 개정) [법 제458호] 1967년 건축사법 [법 제117호] 1996년 건축사 규칙 [P.U.(A) 제379/96호] 1967년 적산사법(1992년 개정) [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 [P.U. (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 [법 제520호] 행정 지침
--	--	---

14	분야	:	화물 도로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된 실체만이 말레이시아에서 화물 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다.  외국인은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49 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2010년 육상 공공운송법[법 제715호] 육상공공운송청(APAD) 허가 정책 지침

15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	<u>투자</u>  바닥 직물 및 바닥 의류 제조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조치	: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행정 지침



16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a) 허가된 제조 창고(LMW) 및 자유산업구역(FIZ) 내에 소재한 회사는 수출 요건이 부과될 것이다.</p> <p>(b) 석유 정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자사 제품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도록 요구된다.</p> <p>(c) 확장 프로젝트는 원료의 10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얻는 기존의 독립 팜유 정제 회사에 대해서만 검토될 것이다. 사바와 사라왁의 경우, 팜원유의 5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얻는 신규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제조 허가가 검토될 것이다. 통합 프로젝트는 자체 농장을 동반하는 프로젝트를 지칭한다.</p> <p>(d) 파인애플 캔 포장의 경우, 원료의 10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공급하는 프로젝트에만 승인이 부여될 것이다.</p>
	조치	:	<p>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p> <p>1967년 관세법(1980년 개정) [법 제235호]</p> <p>1990년 자유구역법 [법 제438호]</p> <p>1974년 석유개발법 [법 제144호]</p> <p>1959년 파인애플산업(통조림공장 관리)규정 [LN. 제24/1959호]</p> <p>1957년 파인애플산업법(1990년 개정) [법 제427호]</p> <p>행정 지침</p>

17	분야	: 법률 서비스(중재는 제외한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b>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 및 라부안 연방 영역</b>  외국 법무회사(로펌)과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 전문직법」 [법 제 166 호]과 「2014년 법률전문직(국제 파트너십 및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의 허가 및 외국인 변호사의 등록) 규칙」 [P.U. (A) 제 148/2014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관할권의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QFLF) 또는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와의 국제 파트너십(IP)을 설립하려면 선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 이슬람 금융에서 증명된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 법무회사(로펌)에 한정하여 최초로 최대 5건의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인정된 관할권의 외국인 변호사만이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 국제 파트너십 또는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외국인 변호사는 어떠한 연도에서도 182일 이상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여야 한다.

		<p>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와 국제 파트너십,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에서 근무하는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 166 호]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p> <p>“장거리 통근”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 166 호] 제 37(2B) (b) 절의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p> <p><b>사바 및 사라왁</b></p> <p>외국 법무회사(로펌)와 외국인 변호사는 사바 또는 사라왁에서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	:	<p>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166호]</p> <p>2014년 법률전문직(국제 파트너십 및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의 허가 및 외국인 변호사의 등록) 규칙 [P.U. (A) 제148/2014호]</p> <p>1990년 라부안회사법 [법 제441호]</p> <p>2010년 라부안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 [법 제704호]</p> <p>1953년 사바 소송대리 법령 [사바 법령 제2호]</p> <p>1953년 사라왁 소송대리 법령 [사라왁 법령 제110호]</p>

18	분야	:	도매 및 소매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8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6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슈퍼마켓, 미니마켓, 식품점/일반 잡화점, 상설 웹 마켓, 상설 노점, 매점이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않은 주유소, 신문 대리점, 약국, 말레이시아 요리 식당, 비스트로 및 직물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2020년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유통업 서비스 참여에 관한 지침 1998년 프랜차이즈법 [법 제590호]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

1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지방
	관련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투자</u>  라이선스 계약하에 일정한 로열티 요율이나 금액을 채택하는 것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조치	:	정책 및 장관 성명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행정 지침

20	분야	:	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 료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방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에 관련된 수의료 서비스 는 말레이시아 수의료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등록 및 설립된 다.
	조치	:	1974년 수의사법[법 제147호] 행정 지침

## 목록 나

###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신규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 (a)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 (b) 제8.5조(시장접근)
  - (c)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 (d) 제8.11조(현지주재)
  - (e)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f)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a)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b) **하위분야**는 지칭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 (c) **관련의무**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d)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다. 그리고

(e) **기존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조치의 비열거적 목록을 적시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그리고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관련한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이 목록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그러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개정으로 인한 차등적인 대우의 유보 범위에 관한 언어의 부재는 그 유보 범위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해석을 저해하지 않는다.
5. 이 목록의 목적상, “CPC” 는, 참고된 경우, 잠정 중앙품목분류 (통계문서 시리즈 M, No.77, 국제경제사회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 따라 비합치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개별 CPC 코드에 대한 “\*\*” 의 사용은 그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의 대상이 되는 전체 서비스 범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칭한다.
6. 다른 당사자들의 양허표는 이 협정의 제8장(서비스 무역), 제10장(투자) 또는 다른 장들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1	분야	:	토지 및 부동산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에 의한 토지 취득이나 거래 또는 토지상의 활동은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기존조치	:	연방 헌법 1960 년 토지취득법[법 제 486 호] 1960 년 토지보전법[법 제 385 호] 1965 년 국가토지법[1965 년 법 제 56 호] 1957 년 연방토지위원회법(1988 년 개정)[법 제 349 호] 1963 년 국가토지법(폐낭 및 말라카 소유권)[법 제 518 호] 1985 년 스트라타 소유권법[법 제 318 호] 2013 년 스트라타 관리법[법 제 757 호] 1957 년 연방토지위원회법(1988 년 개정)[법 제 349 호] 1960 년 토지(집단정착구역)법[법 제 530 호] 1933 년 말레이 보호구역법[F.M.S. 제 142 장] 1930 년 말레이 보호구역법[입법 제 29 호] 1930 년 켈란탄 말레이 보호구역법[1930 년 제 18 호] 1955 년 켈란탄 토지정착법(1991 년 개정)[법 제 460 호] 1353 년 보호구역법[1353 년 제 7 호] 1966 년 펠리스 토지정착법[1966 년 제 16 호] 1936 년 조호르 말레이 보호구역법[1936 년 제 1 호]

		<p>1360 년 테렝가누 말레이 보호구역법 [1360 년 제 17 호]</p> <p>1356 년 테렝가누 정착법 [1356 년 제 65 호]</p> <p>말레이 보호구역 (셀랑고르) (개정) 법 제 15/1961 호</p> <p>말레이 보호구역 (셀랑고르) (개정) 법 제 7/1985 호</p> <p>1926 년 관습적 토지법 [제 215 장]</p> <p>1960 년 관습적 거주권 (렝콘간 토지) 법 [1960 년 제 4 호]</p> <p>1949 년 램바우 운당 (토지) 법 [1949 년 제 2 호]</p> <p>토지 법령 [사바 제 68 장]</p> <p>사바 토지 취득 법령 [사바 제 69 장]</p> <p>1958 년 사라왁 토지법 [제 81 장]</p> <p>1976 년 지방정부법 [법 제 171 호]</p> <p>1976 년 도농계획법 [법 제 172 호]</p> <p>1982 년 연방영역 (계획) 법 [법 제 267 호]</p> <p>1960 년 연방수도법 [법 제 190 호]</p> <p>1974 년 거리 · 배수 · 건물법 [법 제 133 호]</p>
--	--	--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정부 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 분야로 완전 또는 부분 이양 (b)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그리고 (c) 정부 소유 실체 또는 자산의 민영화
	기존조치	:	1957 년 재무부장관(법인설립)법[법 제 375 호] 민영화 종합추진계획 민영화 지침 2016 년 회사법 [법 제 777 호] 부르사 상장 요건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개발 및 사회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미뿌뜨라, 부미뿌뜨라 지위의 회사, 신탁회사 및 기관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연방 헌법 정책 및 장관 성명 재무부 지시 재무부 회람 신경제정책(NEP) 국가개발정책(NDP)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국가 및 주 단위형 투자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부미부뜨라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정책과 관련한 공공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성되거나 운영되는 단위 투자신탁 제도를 포함한다.</p>
	기존조치	:	

5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페트롤리엄 나시오날 베르햇(페트로나스)과 그 승계기관에는 말레이시아의 육상이나 연안의 여부에 관계없이 석유의 탐사, 채굴, 획득 및 확보에 대해 전적인 소유권과 취소불능하고 배타적인 권리, 권한, 자유 및 특권이 부여된다.  페트로나스와 그 승계기관은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석유 및 가스 상위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74 년 석유개발법[법 제 144 호] 그 밖의 이행 조치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p>서비스 무역 및 투자</p> <p>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sup>2</sup></p> <p>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게 참여가 개방된, 모든 아세안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말레이시아는, 아래에 열거된 분야와 관련하여,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에 권리, 우대 및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a) 항공 사안  (b) 해양 및 항만  (c) 방송  (d) 우주 운송, 그리고  (e) 수산업</p>
	기존조치	:	-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 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말레이시아 내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기존 또는 미래 정책에 있어서 조치의 자유화는 외국 법인과 그 본국이 제공하는 능력과 시설이 말레이시아의 구체적인 개발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하여 특혜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외국인 참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비합치 조치는 모든 국가에 무기한 적용된다.</p>
	기존조치	:	-



8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폭발물, 무기, 탄약뿐만 아니라 군 관련 장비 또는 장치 및 유사 제품의 제조, 조립, 마케팅 및 유통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무기 및 폭발물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75 년 산업조정법[법 제 156 호] 1957 년 폭발물법[법 제 207 호] 1960 년 무기법[법 제 206 호]

9	분야	:	장비의 제조, 공급 및 공급자, 도박 서비스의 도소매를 포함하는 게임, 베팅 및 도박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장비의 제조, 공급 및 공급자, 도박 서비스의 도소매를 포함하는 게임, 베팅 및 도박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52 년 복권법[법 제 288 호] 1953 년 일반게임장법[법 제 289 호] 1967 년 폴베팅법 (2018 년 개정)[법 제 809 호] 1953 년 베팅법[법 제 495 호] 1961 년 경주(토타리제이터 위원회)법[법 제 494 호] 1965 년 경주클럽(대중 스테이크 경마)법[법 제 404 호] 2017 년 세관(수입 금지)명령[P.U. (A) 제 103/2017 호]

10	분야	: 원자력연료주기와 전력 발전 및 연료주기를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적용 및 화석연료 또는 재료 기반 발전소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원자력 연료주기와 전력 발전 및 연료주기를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적용 및 화석연료 또는 재료 기반 발전소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84 년 원자력 인허가법 [법 제 304 호] 1990 년 전기공급법 [법 제 447 호]

11	분야	:	문화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의 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수입 및 유통된 후 이들이 자국의 품위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할 권리를 유보한다:</p> <p>(a)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또는 예술품과 영화, 그리고</p> <p>(b) 텔레비전, 케이블과 위성 방송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p> <p>그에 추가하여, 외국인 예술가에 의한 어떠한 예술, 촬영 및 공연도 사전 승인이 요구되며 그러한 활동은 외국인 예술가에 의한 촬영 및 공연 신청을 위한 중앙 기관(PUSPAL)지침을 준수한다.</p> <p>말레이시아는 시청각 협력 협정과 같은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부여하는 차등 대우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sup>3</sup>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보조금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제한이나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p>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 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 이란 다음의 행위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p> <p>(a)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인쇄나 전자 신문의 출판, 배급 또는 판매. 단, 위의 모든 행위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한다.</p> <p>(b) 영화 또는 비디오 기록물의 제작, 배급, 판매 또는 전시</p> <p>(c)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기록물의 제작, 배급, 판매 또는 전시</p> <p>(d) 인쇄 악보 또는 기계 판독 가능 악보의 제작, 배급 또는 판매, 또는</p> <p>(e) 일반 대중을 겨냥한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 서비스 및 방송 네트워크</p>
기존조치	:	<p>1984 년 인쇄출판법 [법 제 301 호]</p> <p>1981 년 말레이시아 국가영화개발공사법 [법 제 244 호]</p> <p>1979 년 말레이시아 수공예개발공사법 [법 제 222 호]</p> <p>2010 년 국립창조산업정책 (DIKN)</p> <p>외국인 예술가에 의한 촬영 및 공연 신청을 위한 중앙 기관 위원회 (PUSPAL) 지침</p>

12	분야	: 제조, 도매 및 유통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의 제조 도매 및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쌀 (b) 설탕 (c) 밀가루 (d) 주류 및 알코올 음료 (e)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관련된 제품 (f) 바틱 섬유 및 의류 (g) 유리 및 유리제품 (h) 바이오디젤 (i) 발전용 기계류 및 특정 산업용 기계류를 포함하는 기계류 및 기기류 또는 그 일부 (j) 모터사이클과 스쿠터를 포함하는 자동차, 승용차 및 상용차 (k) 비금속(卑金屬) 및 비금속 산업 물품 또는 제품 (l)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그리고 (m)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 기계 및 기기(HS 8543)
	기존조치	: 1976 년 소비세법[법 제 176 호] 1990 년 관세자유지역법[법 제 438 호]

13	분야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유해성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처분과 하수 부산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제품의 생산, 마케팅, 공급 및 유통과 슬러지 처리, 전체적 폐수 관리(침전물, 유출수 포함), 무역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유기 및 비유기), 물 재활용 및 자원 회수를 포함하는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74 년 환경품질법[법 제 127 호] 2006 년 물서비스산업법[법 제 655 호] 2017-2030 년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종합추진계획

14	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고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d)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리스 (e) 승무원을 동반하는 항공기 리스 (f) 항공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g) 화물 취급 (h) 항공기 케이터링 서비스 (i) 재급유 서비스 (j) 항공기 운항 정비 (k) 램프 핸들링 (l) 수하물 취급



		(m) 여객 대응, 그리고 (n) 항공을 통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빈도와 경로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
기존조치	:	행정 지침

15	분야	: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을 포함하는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도심 및 교외 정기 운송, 철도, 택시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객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그리고 버스, 택시 및 철도 정거장 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전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16	분야	:	중재 및 샤리아법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중재 및 샤리아법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1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을 포함하는 링깃화의 비국제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국제 결제가 외국 통화로 이뤄지도록 하는 요건  (b) 말레이시아 밖에서의 사용을 위한 링깃화 금융에 대한 비거주자의 접근 제한, 그리고  (c) 비거주자에 의한 말레이시아 내의 링깃화 사용 제한
	기존조치	:	2009 년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법 제 701 호]  2013 년 금융 서비스법[법 제 758 호]  2013 년 이슬람 금융 서비스법[법 제 759 호]  외환 고시

1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거주자에 의한 해외 금융 서비스 공급자로부터의 금융 서비스 구매는 「외환 고시」에 따라 부과되는 요건, 제한 및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p>
	기존조치	:	<p>2009 년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 [법 제 701 호]</p> <p>2013 년 금융 서비스법 [법 제 758 호]</p> <p>2013 년 이슬람 금융 서비스법 [법 제 759 호]</p> <p>외환 고시</p>

19	분야	: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소득 보장 또는 보험 (b) 사회 보장 또는 보험 (c) 사회복지 (d) 공공 교육 (e) 공공 훈련 (f) 보건, 그리고 (g) 보육
	기존조치	: -

20	분야	:	수의료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수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74 년 수의사법 [법 제 147 호]  행정 지침

21	분야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sup>4</sup>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연합 보건 서비스 (b) 병리학 실험실 (c) 치과 진료소 (d) 일반 치과 진료의 (e) 일반 진료의 (f) 조산원을 포함하는 일반 간호사 (g) 의료 진료소 (h) 민간 병원 (i) 민간 정신병원 (j) 민간 이동보호소

<sup>4</sup>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유보목록의 목록 가 유보항목 9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p>(k) 민간 요양원</p> <p>(l) 민간 정신요양원</p> <p>(m) 민간 조산원</p> <p>(n) 민간 혈액은행</p> <p>(o) 민간 투석센터</p> <p>(p) 민간 호스피스</p> <p>(q) 민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그리고</p> <p>(r) 보건부장관이 명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 시설,서비스 또는 보건 관련 서비스</p>
<p>기존조치</p>	<p>:</p>	<p>1971 년 의료법[법 제 50 호]</p> <p>2017 년 의료규정[P.U. (A) 제 188/2017 호]</p> <p>2018 년 치의료법 [법 제 804 호]</p> <p>1998 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법[법 제 586 호]</p> <p>2006 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민간 병원 및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시설)규정[P.U.(A) 제 138/2006 호]</p> <p>2006 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민간 의료 진료소 또는 민간 치의료 진료소)규정[P.U. (A) 제 137/2006 호]</p> <p>2016 년 연합 보건전문직법[법 제 774 호]</p> <p>1950 년 간호사법[법 제 14 호]</p> <p>1985 년 간호사등록규정[P.U. (A)제 494/85 호]</p> <p>1966 년 조산사법[법 제 436 호]</p> <p>1990 년 조산사규정[P.U. (A) 제 181/90 호]</p>

22	분야	:	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16 년 전통 및 보완 의학법[법 제 775 호]  행정 지침

23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하이퍼마켓, 슈퍼스토어, 백화점, 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및 편의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98 년 프랜차이즈법 [법 제 590 호]  2020 년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유통업 서비스 참여에 한관 지침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편의점에 관한 지침

24	분야	: 가스 공급, 발전, 배전, 송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 서비스, 수도 서비스 및 하수도 서비스 관련 공공사업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가스 공급, 발전, 배전, 송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 서비스, 태양 전지판, 수도 서비스 및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06 년 수도 서비스 산업법[법 제 655 호]  1920 년 수도법[법 제 418 호]  주 수도 법률  1990 년 전기공급법[법 제 447 호]  1993 년 가스공급법[법 제 501 호]  2011 년 재생에너지법[법 제 725 호]  사라왁 전기 법령[제 50 장]  1974 년 환경품질법[법 제 127 호]  2017-2030 년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종합추진계획

25	분야	:	무장 호송 서비스 및 무장 경비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무장 호송 서비스 및 무장 경비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6	분야	:	건물 측량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건물 측량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7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유치원 (b) 말레이시아 국가 교과과정을 다루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 서비스 (c) 종교 학교 (d) 원격 학습 (e) 교습 센터 (f) 군사훈련교육, 그리고 (g) 공공 고등교육기관, 간호 교육, 기술전문대학, 지역전문대학, 군사학 및 종교학을 다루는 고등교육 서비스
	기존조치	:	-

28	분야	:	연구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연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어떠한 조치도 법학, 언어학 및 언어의 연구 및 실험 서비스를 제외하고 농업, 생물 다양성, 식품, 농업 기반 산업, 수산업, 사회과학 및 인문학을 다루는 농업 과학 분야의 연구 및 실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산업에서 허용된 외국인 소유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
	기준조치	:	-



29	분야	:	쿠리어 및 특급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는 우편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쿠리어 및 특급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는 우편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12년 우편서비스법[법 제741호] 1967년 관세법[법 제235호]

3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회사의 정관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회사는 그 규정된 제한을 초과한 주식<sup>5</sup>(초과 주식)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p>
	기존조치	:	<p>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p> <p>1991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법 [법 제453호]</p> <p>1996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외국인 소유)규정 [P.U.(A) 제513/96호]</p>

<sup>5</sup> 예를 들어 회사는 초과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특정 권리, 즉 배당금 지급을 여전히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국인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1996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외국인 소유)규정 [P.U.(A) 제513/9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거나 상장된 증권 그리고 지분 매입 또는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07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 [법 제671호]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 2016년 말레이시아 인수합병법 2013년 금융 서비스법 [법 제758호] 2013년 이슬람 금융 서비스법 [법 제759호]

3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국외 거주자 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59/63년 이민법[법 제155호] 1968년 고용(제한)법(2017년 개정)[법 제796호] 국외거주자 서비스국(ESD) 온라인 가이드북 정책 및 장관 성명

3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지정된 법인 <sup>6</sup> 에 제한된 활동이 지정된 법인이 아닌 이들에게 개방되거나 그러한 지정된 법인이 더 이상 비상업적인 기반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서비스 공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 요건은 가격, 품질 및 납품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가진 그 밖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기존조치	: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정책 및 장관 성명 행정 지침

<sup>6</sup> 예시의 목적상, 지정된 법인의 예시는 페디베라스 나시오날 베르햇(베르나스)와 쿠알리티 알람 Sdn. Bhd(Kualiti Alam Sdn. Bhd.)를 포함한다.

3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말레이시아는 면허 또는 허가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부과된 조건, 수량 제한 및 면허 미발급을 포함할 수 있다.
	기존조치	:	정책 및 장관 성명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1974년 석유개발법[법 제144호] 행정 지침

3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법정 기구 <sup>7</sup> 의 권리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정책 및 장관 성명 행정 지침

<sup>7</sup> 예시의 목적상, 법정 기구의 예시는 근로자공제기금(EPF)과 램바가 타붕 하지(Lembaga Tabung Haji)를 포함한다.

36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 주 또는 주와 연계된 법인과의 합작투자가 요구될 수 있다.
	기존조치	:	1994년 광물개발법 [법 제525호] 주 광물 법 국가 광물 정책 2



37	분야	:	농업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조치	:	1965년 국가토지법 [1965년 법 제56호] 1958년 사라왁 토지법 [제81장] 1950년 사바 토지 법령 [제68장] 1976년 도농계획법 [법 제172호] 1976년 식물검역법 [법 제167호] 국가 농업 정책 행정 지침 세관 수출입 금지 명령

38	분야	: 임업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  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와 사바에서 목재 추출과 벌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단, 사라왁의 경우 현지 참여와 현지 과반수 지배가 요구된다. 그러한 행위에 개방되는 산림지대는 그 자원이 지속해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벌목 허용량을 조건으로 한다.  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와 사바에서 목재 추출과 벌목의 부수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단, 사라왁의 경우 허용된 최대 외국인 지분 소유는 30퍼센트이다.
	기존조치	: 1984년 국가임업법 [법 제313호] 1968년 사바 산림법 [1968년 제2호] 2015년 사라왁 산림 법령 [제71장] 주 임업법 행정 지침 2008년 멸종위기종 국제무역법 [법 제686호] 2010년 야생동물보전법 [법 제716호]

3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현지주재(제8.11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10년 전략적 무역법[법 제708호]

4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말레이시아는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을 조건으로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말레이시아는 아래 표에 열거된 제한과 조건에 따라 다음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서 제 8.5 조(시장접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영역에서 당사자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다만,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p>
	기존조치	:	

아래 표의 목적상:

- (a)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란에 있는 “(1)”, “(2)” 및 “(3)” 은 제8.1조(정의) 러호1목부터 3목까지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지칭한다.
- (b) “약속 안함” 은 명시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서 주어진 공급 형태에 대해 시장접근 약속 안함을 말한다. 그리고
- (c) “제한 없음” 은 명시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서 주어진 공급 형태에 대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없음을 말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사업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회계 및 감사 서비스(CPC 862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 회계사 또는 말레이시아 회계법인과의 현지 등록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납세 신고를 제외한 부기 서비스(CPC 8622)</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 회계사 또는 말레이시아 회계법인과의 현지 등록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세무 서비스(CPC 8630)</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공인 세무사 또는 세무 법인과 파트너십 또는 민간 유한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건축 서비스(CPC 86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건축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음.</p> <p>b) 복수 전문직 간 동업(건축, 엔지니어링 또는 적산)의 경우, 본국에서 등록된 전문 직업인에 의한 합작투자에서 외국인 지분은 최대 30퍼센트까지임. 외국인 이사직은 허용되지 않음.</p>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음.</p> <p>b) 복수 전문직 간 동업(건축, 엔지니어링 또는 적산)의 경우, 본국에서 등록된 전문 직업인에 의한 합작투자에서 외국인 지분은 최대 30퍼센트까지임. 외국인 이사직은 허용되지 않음.</p>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에서 체결된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p> <p>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그러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은 서비스 계약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함.</p>
도시계획 서비스(CPC 86741)	<p>(1)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체계적이고 조율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토지 이용, 부지 선정, 통제 및 활용, 도로 체계 및 토지 용역에 관한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용대상으로 함.</p>	<p>(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조경 서비스</p> <p>골프장 및 테마파크의 심미적 조경을 위한 자문, 계획 및 설계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함. (CPC 8674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 등록 조경사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수의료 서비스(CPC 932)</p> <p>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b>연구개발 서비스</b>	
<p>인문과학, 사회학 및 심리학 연구 개발 서비스(CPC 85201)</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경제학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8520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그 밖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CPC 85209)</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0**)</p> <p>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모든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함. 그리고 재료,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프로세스의 생산이나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체계적 또는 집중적 연구로 정의되며 다음은 포함하지 않음.</p> <p>(a) 제품 품질관리 또는 재료,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검사</p> <p>(b)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연구</p> <p>(c)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p> <p>(d) 효율 조사 또는 관리 연구, 그리고</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계약 연구개발회사 및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로서 현지에 설립된 연구개발회사에 한함.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e) 시장 조사 또는 판매 촉진	
<b>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b>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상품 운송에 관련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li> </ul>
연안운송 및 역외무역을 제외한 선박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li> </ul>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li> </ul>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건설 및 광업용 장비와 산업 플랜트 및 장비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li> </ul>
가구 및 그 밖의 가정용 기구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li> </ul>
<b>그 밖의 사업 서비스</b>	
<b>광고 서비스</b>	
(a) 광고 공간 또는 시간 판매 또는 리스 서비스	(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CPC 8711)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u>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u></p> <p>광고는 최소한 80퍼센트의 현지 콘텐츠를 가져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어야 함.</p>
(b) 광고 기획, 제작 및 배치 서비스(CPC 8712)	<p>(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u>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u></p> <p>광고는 최소한 80퍼센트의 현지 콘텐츠를 가져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어야 함.</p>
(c) 그 밖의 광고 서비스(CPC 8719)	<p>(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u>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u></p> <p>광고는 최소한 80퍼센트의 현지 콘텐츠를 가져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어야 함.</p>
시장 조사 서비스(CPC 86401)	(1)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여론 조사 서비스(CPC 8640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경영 컨설팅 서비스	
(a) 비재래식 에너지 전송 관리 관련 자문, 지침 및 운영지원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50**)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b) 위험 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 관리 서비스에 관한 자문, 지침 및 운영지원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50**)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c) 다음과 같은 약학 분야의 자문 및 지침을 적용 대상으로 함.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i) 원재료 형태 약물 제조에 관한 기초 물질 제조 자문 (ii) 새로운 약물전달 시스템 (iii) 생명 공학-살아있는 세포의 프로세스 및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iv) 약물 개발 및 약물과 백신 생산 방법의 신기술, 그리고 (v) 백신 생산 (CPC 8650**)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트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d) 국제 부가가치 통신망 서비스, 농촌 통신 개발 및 통신분야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지침을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5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트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건설의 경우를 제외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트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a)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트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b) 물리적 특성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c)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d) 그 밖의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9)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보존 기술 등과 같은 부가가치서비스를 포함한 작물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자문 및 운영지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농업 부수 서비스(CPC 88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30퍼센트임.</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보존 기술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수산업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자문 및 운영지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어업 부수 서비스(CPC 882**)</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30퍼센트임.</p>
<p>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 및 885**, 단 88442는 제외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p>임원급 소개 서비스 (CPC 87201)</p> <p>다른 사람에 의한 고용을 위한 임원급 인력(고위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소개, 선정 및 추천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잠재적 고용주 또는 장래의 피고용인에 의하여 조달될 수 있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p>지각조사 서비스</p> <p>연안 3D 지진 현장 조사, 자원 탐사 및 개발 지원에서의 3D 지진 현장 조사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2)</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지표조사 서비스</p> <p>자산(부동산) 분야의 상업 및 산업 하위분야에 대한 건물 결함 진단, 수리 비용 및 개선 작업 지침을 포함한 건물들의 건설, 상태 및 노후화에 관한 조사 및 평가에서의 건물 조사 제공에 한한 건물 조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3)</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지표조사 서비스</p> <p>중재 또는 소송, 세금 감가상각, 계약 전 및 후 감사, 기술적 실사, 자원 분석 및 건설 능력 분석 제공에서의 적산(비용공학) 전문가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3)</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장비의 정비 및 수리(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CPC 8866)</p> <p>의료, 정밀 및 광학 기기, 시계를 적용 대상으로 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p>
<p>포장 서비스(CPC 8760)</p> <p>포장재 상의 정보 인쇄만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는 제외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번역 및 통역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b>커뮤니케이션 서비스</b> <b>쿠리어 서비스</b>	
쿠리어 서비스(CPC 7512)  편지 및 엽서를 제외한 문서 및 소포에 대한 쿠리어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b>시청각 서비스</b>  영화, 비디오 테이프 및 오디오 녹음물 배급 서비스(CPC 96113)	(1)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b>유통 서비스</b>  <b>도매 및 소매 사업</b>	
위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  섬유, 의류 및 신발에 한함.	(1) 말레이시아에서 설립 및 등록되어야 하는 위탁 중개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자동차 판매(CPC 61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  (a) <u>지분 구조</u>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퍼센트의 부미뿌트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판매(CPC 6113)</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트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모터사이클 및 스노우모빌 그리고 관련 부분품 및 부속품 판매(CPC 6121)</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트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CPC 6130)</p>	<p>(1)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농업 원료 및 살아있는 동물의 도매 서비스 (CPC 6221)</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가정용 기구, 물품 및 장비의 도매 서비스(CPC 6224)</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의약품 및 의료상품과 화장품의 도매 서비스(CPC 6225)</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농업을 제외한 중간 생산물의 도매 서비스, 재활용 폐기물 및 부스러기 그리고 재료의 도매 서비스(CPC 6227)</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p>기계류, 장비 및 공급품의 도매 서비스(CPC 6228)</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보항목은 다음에 한정됨.</p> <p>(a) <u>지분 구조</u></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 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 <u>최소 자본금 요건</u>          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p>
<b>환경 서비스</b>	
<p>폐수 관리</p> <p>산업 오수의 제거, 처리 및 처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1)</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폐기물 처리 서비스</p> <p>처리 및 처분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 산업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p> <p>(CPC 9402**)</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국가 고형폐기물관리 기술평가 위원회의 승인 및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부로부터 승인받은 면허를 통해서만 가능함.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폐기물 처리 서비스</p> <p>다음에 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p> <p>(a) 통합 바이오매스 처리 시설 서비스, 그리고</p> <p>(b) 서비스 제공자는 바이오매스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위한 고도의 특수 기술을 갖춰야 하며 모든 환경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제품은 에너지 목적의 신재료로 이용될 것임.</p> <p>(CPC 9402**)</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환경권 대기 보호</p> <p>이동오염원 배출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 또는 저감 프로그램의 시행을 포함하여 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용 사업장에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4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에 상응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소음 저감 서비스</p> <p>거주용, 상업용 및 산업용 사업장 내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소음 저감 및 스크린 설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5)</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오염 토양 정화 및 복구 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60**)</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b>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b>	
<p>구급차 서비스(CPC 93192**)</p> <p>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차량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b>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b>	
<p>인바운드 여행에 한정된 여행알선대행 서비스(CPC 7471)</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그리고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b>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b>	
<p>그 밖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서비스(CPC 96590)</p> <p>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임 서비스는 도박과 베팅을 포함하지 않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b>운송 서비스</b>	
<p><b>해상 운송 서비스</b></p> <p>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p> <p>내수를 제외한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CPC 74540)</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
<p>선박의 정비 및 수리(CPC 8868**)</p> <p>이는 정박 또는 접안 중인 외항선의 정비 및 수리와 현지 선박의 정비 및 수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42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전파 분배, 보편적 서비스와 번호 부여 및 전자적 주소 부여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98 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법 제 588 호] 2000 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허가)규정 [P.U. (A) 제 129/2000 호] 2000 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전파)규정 [P.U. (A) 제 128/2000 호] 전파 계획 번호 부여 및 전자적 주소 부여 계획(NEAP)

43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이 목록 부록(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말레이시아)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말레이시아는, 이 목록 부록(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말레이시아)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상업 은행, 투자은행, 역외 직접 보험사, 역외 재보험사, 역외 보험 중개인, 역외 보험 인수 관리자, 역외 보험 관리자, 직접 보험사, 재보험사 및 상업 은행과 투자은행의 대표 사무소에 대하여, 이 목록 부록(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말레이시아)에 명시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평적 양허에서의 제한은 이 목록 부록(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말레이시아)에 명시된 금융 서비스 활동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제한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목록 부록(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말레이시아)에 명시된 말레이시아의 약속은 그에 따라 은행, 보험 또는 자본시장 하위분야에서 구체적인 유보가 이뤄지

		<p>지 않는 한 샤리아 준수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접근방식은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에 합치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었어야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모든 공급 형태의 금융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는 이행요건 금지 및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를 수반하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조치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

44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8.6조 및 제10.4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권리, 특혜 및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 었어야 하는 투자 및 서비스를 제외한 투자 및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투자 및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말레이시아는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요건을 채택, 유지,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시행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

47	분야	:	신용 보고 서비스
	하위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신용 보고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09 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법 제 701 호] 2010 년 신용보고기관법[법 제 710 호] 2014 년 신용보고기관(등록)규정[P.U. (A) 제 142/2014 호] 2014 년 신용보고기관(위법행위 과태료부과)규정[P.U. (A) 제 275/2014 호] 행정 지침

48	분야	:	해상 연안운송 및 정부 화물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투자</u>  말레이시아는 해상 연안운송 및 정부 화물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행정 지침



49	분야	:	주류 및 알코올 음료,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궤련 제품과 개별 기능을 갖는 전기 기계 및 기기(HS 8543)의 광고
	하위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주류 및 알코올 음료,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궤련 제품과 개별 기능을 갖는 전기 기계 및 기기(HS 8543)의 광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행정 지침

50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공동번영비전 2030 및 신산업종합추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8</sup>
	기존조치	:	공동번영비전 2030 신산업종합추진계획 정책 및 장관 성명

<sup>8</sup>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유보목록의 목록 가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 부록

### 금융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

#### 말레이시아

1. 이 부록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조치 목록)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목록 나의 유보항목 43과 함께 읽는다.
2. 이 부록의 목적상,
  - (a)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란에 있는 “(1)”, “(2)”, “(3)” 및 “(4)” 는 각각 제8.1조(정의)리호1목부터 4목까지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지칭한다.
  - (b) “약속 안함” 은 명시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서 주어진 공급 형태에 대하여 시장 접근 또는 내국민 대우 약속 안함을 말한다.
  - (c) “약속 안함\*” 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을 말한다. 그리고,
  - (d) “제한 없음” 은 명시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서 주어진 공급 형태에 대하여 시장 접근 또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없음을 말한다.
3. 제8.5조(시장접근)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래 표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란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조건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b>			
A.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역외 직접 보험회사, 역외 재보험회사, 역외 보험 중개인, 역외 보험 인수 관리자, 역외 보험 관리자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라부안으로 진입이 한정됨.</p> <p>진입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지점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는 자회사의 수립으로 제한됨.</p> <p>(4)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 관련 자연인의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 관련 자연인의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B.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13개의 완전하게 외국인 소유인 상업은행은 기존 주주에 의한 완전한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sup>9</sup> 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 진입은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상업은행 및</p>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아래에 열거된 각각의 행위에 기재된 것은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외국 은행이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에 대해 총 5퍼센트 이상의 지분 소유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p>	

<sup>9</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13개의 완전한 외국인 소유의 상업은행을 지칭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투자은행에 대한 외국 은행의 지분 참여로 제한되며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외국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2013년 금융 서비스법」에 따라 현지에서의 설립이 요구됨.</p> <p>상업은행은 다른 상업은행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1개의 투자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p> <p>투자은행은 상업은행이나 다른 투자은행의 어떠한 지분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허가를 받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소유가 이미 5퍼센트 이상인 그 밖의 인은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에 대하여 5퍼센트 이상의 지분 소유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해서도 진입이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연구, 정보 교환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음.</p>	<p>기준을 충족해야 함.</p> <p>(a) 그 외국 은행은 무역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p> <p>(b) 그 외국 은행의 국가는 말레이시아에 중대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가짐. 그리고</p> <p>(c) 그 외국 은행의 국가는 말레이시아 은행산업에서 중대한 대표성을 갖지 않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연인의 주재는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만 제안됨.</p> <p>(b) 각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을 위한 5명의 고위 관리자 및 10명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p> <p>고위관리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권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 개인임.</p> <p>다음에 관련된 분야의 각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을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무역 금융</li> <li>(ii) 기업 금융</li> <li>(iii) 재정 관리</li> <li>(iv) 정보기술</li> <li>(v) 위험 관리</li> <li>(vi) 자본시장상품</li> <li>(vii) 파생상품</li> <li>(viii) 신용 위험 관리, 그리고</li> <li>(ix) 내부 통제</li> </ul> <p>(c)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의</p>	<p>(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대표 사무소의 경우, 2명의 외국 국민. 2개의 최고위 직책을 위한 오직 1명의 외국 국민, 그리고</p> <p>(d) 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직접 보험 및 재보험 회사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외국 보험회사는 「2013년 금융서비스법」 법 제758호에 따라 현지에서의 설립이 요구됨.</p> <p>「1996년 보험법」(「2013년 금융서비스법」 법 제758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현지에서의 설립이 요구되었던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됨<sup>10</sup>.</p> <p>현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원소유자였던 기존의 외국인 주주<sup>11</sup> 또한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됨. 다만,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외국 보험회사에 의한 신규 진입은 현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로 제한되며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p>	<p>(1)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이 부록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3) 아래에 열거된 각각의 행위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외국인 보험회사가 현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에 대해 총 5퍼센트 이상의 지분 소유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함.</p> <p>(a) 그 외국 보험회사는 무역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p> <p>(b) 그 외국 보험회사의 국가는 말레이시아에서 중대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가짐.</p> <p>(c) 그 외국 보험회사의 국가는 말레이시아 보험 산업에서 중대한 대표성을 갖지 않음. 또는</p> <p>(d) 그 외국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 및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보험회사는 다음의 회사에 대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음.</p> <p>(a) 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말레이시아내의 다른 보험회사, 또는</p> <p>(b) 보험 중개 회사</p> <p>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소유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그 밖의 인은 다음의 회사에 대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 소유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재보험 회사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그 인이 주주인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보험회사, 또는</p> <p>(b) 보험 중개 회사</p> <p>재보험 회사는 약속 안함.</p> <p>(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연인의 주재는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만 제안됨.</p> <p>(b) 현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경우, 5명의 고위 관리자 및 10명의 전문가 또는 전문인.</p> <p>고위관리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권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 개인임.</p> <p>다음에 관련된 분야의 각 보험 기관을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인.</p> <p>(i) 일반 기업의 특수 보험상품 보험 인수</p> <p>(ii) 정보기술</p> <p>(iii) 보험 계리 업무</p> <p>(iv) 위험 관리</p>	<p>(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p>(e)</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 투자 운용 (vi) 상품 개발 (vii) 고객서비스, 그리고 (viii) 외국 및 지역 사업의 서비스, 그리고  (c) 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		

<sup>10</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을 지칭한다.

<sup>11</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기존 외국인 주주를 지칭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I. 금융 서비스 활동</b>			
<b>A. 보험을 제외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b>			
<p>대중, 도매 및 소매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p>	<p>(1) 말레이시아에서 예금의 판촉, 광고 및 인수는 허용되지 않음.</p> <p>(2) 제한 없음.</p> <p>(3) 상업은행, 투자은행 또는 역외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됨.</p> <p>라부안 내 역외 은행은 외화 예금만 인수하도록 허용됨.</p> <p>라부안 내 역외 투자은행은 예금 인수가 허용되지 않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업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지점 설립(장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의 네트워킹은 약속 안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p>	<p>(1) 어떠한 통화로든 2,500만 말레이시아 링깃 상당의 금액을 초과해 거주자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내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p> <p>(2) 어떠한 통화로든 2,500만 말레이시아 링깃 상당의 금액을 초과해 거주자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내 상업은행 또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p> <p>(3) 비은행<sup>12</sup>으로서의 진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됨.</p> <p>(a) 현지에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수립을 통한 외국 금융 기관 그리고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p> <p>(b) 대표 사무소</p> <p>대표 사무소는 연구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음.</p> <p>상업은행에 의한 팩토링 서비스의 제공은 별도의 실체의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인이 지배하는 상업은행에 의한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투자은행은 소비자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p> <p>오직 상업은행만이 당좌대월을 제공할 수 있음.</p> <p>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외화로만 대출 제공이 허용됨.</p>	<p>(3)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이 지배하는 은행 기관은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회사가 은행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총 신용편의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신용편의(팩토링 및 리스를 포함함)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됨.</p> <p>상업 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지점 설립(장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함)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의 네트워킹은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각 설립체에 최고경영자 직책이 아닌 관리직의 외국 국민 1명 외에는 약속 안함.</p> <p>각 비은행의 대표 사무소의 경우, 2명의 외국 국민. 2개의 최고위 직책에 오직 1명의 외국 국민만을 조건으로 함.</p> <p>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2</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언급된 양허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비은행을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금융 리스	<p>(1) 어떠한 통화로든 이루어지는 거주자에 대한 리스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내 리스회사나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p> <p>(2) 어떠한 통화로든 이루어지는 거주자에 대한 리스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내 리스회사나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p> <p>(3) 상업은행에 의한 리스 서비스의 제공은 별도의 실체의 설립이 요구되며 외국인이 지배하는 상업은행에 의한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비은행으로서의 진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됨.</p> <p>(a) 현지에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수립을 통한 외국 금융기관, 그리고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대표 사무소</p> <p>대표 사무소는 연구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음.</p> <p>저명한 외국 리스 회사에 의한 라부안 내 지점 또는 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진입이 허용됨. 그러한 역외 실체는 외국 통화로만 거래할 수 있음.</p> <p>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외국 통화로만 금융 리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p> <p>(4) 각 설립체에서 최고경영자 직책이 아닌 관리직 1명과 기술직 1명인 2명의 외국 국민 외에는 약속 안함.</p> <p>대표 사무소의 경우, 2명의 외국 국민. 2개의 최고위 직책에 오직 1명의 외국 국민만을 조건으로 함.</p> <p>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p> <p>역외 리스회사의 경우,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자연인의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p>역외 리스회사의 경우,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자연인의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즉, 신용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p>	<p>(1) 전자 자금 이체 시스템은 승인이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역외 은행은 비거주자에게만 지급 및 송금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허용됨.</p> <p>상업 은행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당좌예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p>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그리고 외화의 매각 또는 매입은 환전소 면허가 요구됨. 진입은 현지에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수립으로 제한되며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각 설립체에서 최고경영자 직책이 아닌 관리직 1명인 외국 국민 외에는 약속 안함.</p> <p>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업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지점 설립(장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함)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의 네트워킹은 약속 안함.</p> <p>외국인 지분 소유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수표 회사는 지점 설립(인출기를 포함함)이 허용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불카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진입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으로 제한됨.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됨. (4) 각 설립체에 2명의 고위관리자 외에는 약속 안함.  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보증 및 약정	(1)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은행에 우선매수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은행에 우선매수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및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 없음. (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및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금 및 외환 중개 서비스	(1) 말레이시아 링깃 및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금융상품이 수반되는 중개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권한을 받은 딜러 그리고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2) 말레이시아 링깃 및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금융상품이 수반되는 중개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권한을 받은 딜러 그리고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진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됨.</p> <p>(a) 기존 기관<sup>13</sup>에 대한 지분 참여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의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p> <p>(b) 자금 및 외환 중개인에 의한 라부안에서 등록되거나 설립되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수립</p> <p>역외 실체에 의한 자금 및 외환 중개 서비스는 외국 통화로만 한정됨.</p> <p>(4) 역외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역외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의 경우,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자연인의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역외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역외 자금 및 외환 중개인의 경우,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자연인의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3</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기존의 기관을 지칭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에 대하여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p> <p>(a) 단기금융상품 (b) 외환 (c) 양도성 증권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 (e)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그리고 (f) 금피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p>	<p>(1) 고객계좌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으로 제한됨.</p> <p>고객계좌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특정 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말레이시아 규제 당국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닌 파생상품 계약으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라부안 내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에 의한 거래는 말레이시아 내 승인된 은행과의 통화 매각 또는 매입을 제외하고, 외화로 수행되어야 함.</p> <p>라부안 내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에 의한 자기계좌 거래는 라부안 내 역외 회사 및 해외의 외국 회사가 개발 및 발행한 상품으로 제한됨.</p> <p>라부안 내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에 의한 고객계좌로의 거래는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라부안 내 역외 회사 및 해외의 외국 회사가 개발 및 발행한 상품으로 한정됨.</p> <p>라부안 내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및 역외 회사에 의한 말레이시아 회사의 지분 거래는 라부안에서 등록되거나 설립된 역외 회사가 아닌 비거주 고객에 한정됨.</p> <p>오직 상업은행,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만 외화 거래가 허용됨.</p> <p>다음은 자기계좌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 없음.</p> <p>(a)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그리고</p> <p>(b)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표준화된 파생상품</p> <p>비은행이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증권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포함함.</p> <p>비은행이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표준화된 파생상품을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을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주간사로서의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 및 모집(공모 또는 사모)과 관련된 서비스(발행 및 평가기관은 제외됨)</p>	<p>(1) 발행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는 인가가 요구됨.</p> <p>(2) 발행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는 인가가 요구됨.</p> <p>(3) 라부안 내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에 의한 참여는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과 말레이시아 국외 증권 발행을 위한 것으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또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만이 증권 발행에 관련된 입장제출을 하거나 주간사로서 증권 발행 및 모집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p>비은행에 의한 참여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증권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주 달러 임명은 약속 안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인수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인가가 요구됨.</p> <p>(3) 비은행으로서의 참여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증권 취급을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상업은행은 회사채에 한하여 인수가 허용됨.</p> <p>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라부안 내 역외 회사 및 해외의 외국 회사가 개발 및 발행한 외화 표시 증권의 인수가 허용됨.</p> <p>(4) 상업은행, 투자은행,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상업은행, 투자은행,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의 자산 관리</p> <p>(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p> <p>(b)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그리고</p> <p>(c) 수탁 및 예탁 서비스</p>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에 의한 자산 운용은 비거주 고객 및 외화 자산으로 한정됨.</p> <p>말레이시아 지분 또는 지분 연동 투자에 대한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에 의한 자산 운용은 라부안에서 등록된 역외 회사가 아닌 비거주자로 한정됨.</p> <p>상업은행에 의한 자산 운용은 별도의 실체의 설립이 요구됨. 외국인이 지배하는 상업은행의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펀드 운용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비은행으로서의 진입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펀드 운용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을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신용 조회 및 분석과 인수,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관한 투자 자문을 포함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p>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및 포트폴리오 자문 외의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내 상업은행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p> <p>(3) 비은행으로서의 진입은 다음을 통해서만 허용됨.</p> <p>(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기업 금융 자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로 제한됨.</p> <p>(b)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재무 설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c)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투자 자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0퍼센트로 제한됨. 또는</p> <p>(d) 대표 사무소.</p> <p>대표 사무소(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 사무소를 포함함)는 정보 연구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하도록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구물을 발표하고 유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위의 (a), (b) 및 (c)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인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라부안 내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는 비거주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4) 은행의 경우, 각 조직당 1명의 전문가 또는 전문인.</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비은행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각 대표 사무소의 경우, 3명의 외국 국민, 2개의 최고위 직책에 오직 1명의 외국 국민만을, 그리고 관리급 직책에 나머지 2명을 조건으로 하며 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금융 분야에 대한 운영본부(OHQ) (일반 관리 및 행정, 사업 기획, 기술 지원, 마케팅 통제, 판촉 기획, 훈련 및 인사 관리, 재정 및 펀드 운용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자사 사무소 및 관련 회사를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현지에서 설립된 완전하게 외국인 소유인 회사를 통한 경우에 한함.</p> <p>외국인 소유 회사, 운영본부 서비스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는 외국인 소유 회사의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외국인 소유 회사의 지역 사무소 및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설립된 외국인 소유 회사는 운영본부로서의 자격을 추구할 수 있음.)</p> <p>운영본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p> <p>(a) 운영본부 서비스 활동 중 적어도 3가지를 수행함. (b) 모회사나 본사 그리고 관련 회사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 국외 회사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함. (c) 자산과 피고용인 측면에서 규모가 크고 건설한 외국인 소유 회사를 보유함. (d) 자격을 갖춘 임원, 전문 직업인, 기술 및 그 밖의 지원 인력을 다수 갖춘 회사에 대한</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네트워크를 보유함.</p> <p>(e) 말레이시아 국외에 소재한 본사 또는 모회사와 상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리고</p> <p>(f) 다음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p> <p>(i) 말레이시아인이 제공하는 법률, 회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함.</p> <p>(ii) 말레이시아인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그리고</p> <p>(iii) 더 많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능하게 함.</p> <p>(4) 아래의 조건에 적용을 받는 각 조직 당 1명의 전문가 또는 전문인 외에는 약속 안함.</p> <p>(a) 그러한 인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신규 서비스 제품 및 기술, 연구 장비 및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해야 함. 그리고</p> <p>(b) 입국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되고 갱신 가능함.</p>	<p>(4)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증권 중개 서비스	<p>(1)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참가 기관인 말레이시아 내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함.</p> <p>(2)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참가 기관인 말레이시아 내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함.</p> <p>(3) 비은행으로서의 진입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증권을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서만 허용됨.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p> <p>대표 사무소(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 사무소를 포함함)는 정보 연구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하도록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구물을 발표하고 유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증권 증개회사의 경우, 부속서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말레이시아 양허표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각 대표 사무소의 경우, 2명의 외국 국민. 2개의 최고위 직책에 오직 1명의 외국 국민만을 조건으로 함. 입국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한정됨</p>	<p>(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상품 선물 증개 서비스	<p>(1)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는 파생상품 거래소의 거래 참가자인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p> <p>(2)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는 파생상품 거래소의 거래 참가자인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p> <p>(3) 비은행으로서의 진입은 다음을 통해서만 허용됨.</p> <p>(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허가를 받은 현지에서 설립된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현지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수립. 그러한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로 제한됨.</p> <p>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말레이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임. 인가는, 각 경우에 맞게,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의 부여를 포함함. 또는</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대표 사무소.</p> <p>대표 사무소(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 사무소를 포함함)는 정보 연구 및 연락 서비스만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구물을 출판하고 유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4) 시장 테스트를 조건으로, 설립체 당 관리직을 위한 1명의 외국 국민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시장접근하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B. 보험 서비스</b>			
직접 보험(손해보험)	<p>(1) 말레이시아 내 판촉 및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p> <p>다음의 보험에 대한 해외에서의 직접 모집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됨.</p> <p>(a)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p> <p>(b) 거주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p> <p>그러한 보험이 말레이시아 내 직접 보험 회사로부터 가용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부여될 것임.</p> <p>(2) 다음 보험에 대한 해외에서의 직접 모집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됨.</p> <p>(a)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p> <p>(b) 거주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그러한 보험이 말레이시아 내 직접 보험 회사로부터 가용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부여될 것임.</p> <p>(3)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됨.</p> <p>라부안 내 역외 직접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위험에 대한 직접 보험을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가 50퍼센트 미만인 직접 보험회사는 지점 설립이 허용됨.</p> <p>직접 보험회사는 자사의 기존 지점 네트워크<sup>14</sup>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p> <p>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한 직접 보험회사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은 약속 안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직접 보험(생명)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됨.</p> <p>직접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연계 보험 사업 및 신규 생명보험 상품은 승인이 요구됨.</p> <p>라부안 내 역외 직접 보험회사는 거주자의 생명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 제한은 라부안 내 역외 직접 보험회사에 의한 고액 순자산 거주자에 대한 일반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가 50퍼센트 미만인 직접 보험회사에만 지점 설립이 허용됨. 직접 보험회사는 자사의 기존 지점 네트워크<sup>15</sup>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p> <p>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한 직접 보험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은 약속 안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4</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지점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sup>15</sup> GATS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지점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재보험 및 재재보험(손해보험)	<p>(1) 출재보험은 현지에서 여력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됨.</p> <p>(2) 출재보험은 현지에서 여력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됨.</p> <p>(3) 어떠한 출재보험에 앞서 국내 위험 수용 능력을 최적화할 역외 직접 보험 및 역외 재보험 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의 의무.</p> <p>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p> <p>말레이시아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역외 재보험 회사로서의 진입은 라부안으로 한정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각 손해재보험상품별로 말레이시아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 30퍼센트까지 자발적 재보험 출재.</p> <p>말레이시아의 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p> <p>(2) 각 손해재보험상품별로 말레이시아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 30퍼센트까지 자발적 재보험 출재.</p> <p>말레이시아의 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p> <p>(3) 말레이시아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역외 재보험 회사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재보험 및 재재보험(생명)</p>	<p>(1) 출재보험은 현지에서 여력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됨.</p> <p>(2) 출재보험은 현지에서 여력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됨.</p> <p>(3) 다음의 회사는 어떠한 출재보험에 앞서 국내 위험 수용 능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요구됨.</p> <p>(a) 말레이시아 내 직접 생명보험 및 생명재보험 회사, 그리고</p> <p>(b) 고액 순자산 거주자에게 생명보험 또는 생명재보험 판매가 허용된 역외 직접 생명보험회사 및 역외 생명재보험회사</p> <p>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p> <p>말레이시안 라이프 리인슈어런스 그룹 버하드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p> <p>역외 재보험 회사로서의 진입은 라부안으로 한정됨.</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말레이시아의 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p> <p>(2) 말레이시아의 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역외 재보험회사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보험 중개-보험 중개업(대리는 제외함)	<p>(1) 직접 보험 중개 서비스는 라부안 내 역외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음.  재보험 중개업이 허용됨.</p> <p>(2) 직접 보험 중개 서비스는 라부안 내 역외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음. 재보험 중개업이 허용됨.</p> <p>(3) 역내 보험 중개업은 약속 안함. 역외 보험 중개사가 말레이시아의 위험에 대한 직접 보험을 중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 제한은 말레이시아의 위험에 대한 재보험 중개업에는 적용되지 않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보험 중개-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	(1) 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는 허용되지 않음.  (2) 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는 허용되지 않음.  (3) 역내 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는 약속 안함.  역외 보험 인수 관리자는 라부안 내 역외 보험회사 외에 어떠한 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역외 보험 관리자는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보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의 보험 부수 서비스</p> <p>(a) 상담(보험산업에 대한 보험 대리 서비스는 제외함)</p> <p>(b) 계리 위험 평가</p> <p>(c) 위험 관리, 그리고</p> <p>(d) 해상 손해 사정</p>	<p>(1) 계리 서비스는 라부안 내 역외 보험 회사 및 역외 재보험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의 설립으로 제한됨.</p> <p>(a) 현지에서 설립된 회사</p> <p>(b) 지점, 또는</p> <p>(c) 파트너십</p> <p>역외 회사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p> <p>(4)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한 자연인의 일시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상업적 주재 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한 자연인의 일시 주재 외에는 약속 안함.</p>	